

## 오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부과기준에 관한 지침

제정 2000년 12월 8일 예규 제28호  
일부개정 2023년 5월 1일 규칙 제88호  
(제명개정)

**제1조(목적)** 이 기준은 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시 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의 유지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감경기준을 정하는데 있다. <개정 2023. 5. 1>

**제2조(감경기준)** 「청소년보호법시행령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.

[전문개정 2023. 5. 1]

**제3조(감경의 예외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3. 5. 1>

1. 동일인이 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었을 경우
2. 위반행위가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
3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
#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기준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당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이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.

부칙 <2023. 5. 1 예규 제88호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지침은 시행 당시 「청소년보호법」을 위반하여 이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.

[별표] <개정 2023. 5. 1>

□ 과징금 감경기준(감경대상 및 감경비율)

감 경 대 상	감경비율	비 고
1. 65세이상 노인이나 청소년이 위반한 경우	「청소년 보호법 시행령」 제44조 제2항 별표11의 과징금액의 50% 감경	직권감경
2. 국민기초수급자, 저소득 모자·부자가정,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(1급~3급)의 경우	”	”
3.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기소유예·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	”	”
4.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처음이며, 사유가 경미할 경우	”	”
5.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기간·금전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처벌이 과하거나 비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	「청소년 보호법 시행령」 제44조 제2항 별표11의 과징금액의 30% 감경	”
6. 기타 시장이 감경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	「청소년 보호법 시행령」 제44조 제2항 별표11의 과징금액의 30~50% 이내	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

※ 법적근거 : 「청소년 보호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(과징금의 산정기준)

-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기간,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1/2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.